

서울교통공사 이동통신 기간제업무직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협약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SK텔레콤(주),(주)KT,(주)LGU+(이하 “이통사”라 한다)는 이동통신 안전관리 기간제업무직(이하 “업무직”이라 한다) 채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5G 이동통신망 조기 구축 및 지하철 이용고객에게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는 기간제업무직을 채용하여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통사는 기간제업무직 채용·운영 관련 인건비 등 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기 협의에 따라 “공사”와 “이통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채용인원 및 기간)

공사가 채용하는 기간제업무직 인원은 총26명이며, 채용기간은 2020년 5월 4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12개월)임을 “이통사”에 통보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인원 및 채용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제 3조(업무범위)

공사가 채용하는 기간제업무직의 업무는 지하철 1~8호선 영업구간내 “이통사”의 이동통신 5G 설치공사(기존설비 포함)와 관련한 구축공사의 안전관리입회업무를 담당한다.

제 4조(안전교육)

- ① “이통사”의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등 작업책임자는 공사에 임하기 전 작업안전수칙 등 작업안전교육을 “공사”로 부터 받아야 한다.
- ② 전항의 교육을 받은 “이통사” 작업책임자는 자사 작업자들에게 교육내용의 전달 및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 5조(비용의 청구 및 납부)

- ① “이통사”는 기간제업무직과 관련한 모든 비용(채용비용, 1년간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지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비용은 “공사”에서 산정한 방식에 의하며 일반관리비는 총 인건비의 10%로 한다.
- ③ “공사”는 비용을 익월 5일까지 지정된 분담비율(통상근무자:1/3, 변형야간근무자:입회실적비율)에 따라 “이통사”에게 청구하며 “이통사”는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청구서를 작성 “이통사”에 제출하며 “이통사”는 “공사”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이통사”는 상호 합의 하에 비용의 납부를 “이통사”가 지정한 제3자가 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 6조(민·형사상 책임)

① 본 사업 과정에서 “이통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등 후속처리 비용은 “이통사”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공사”와 “이통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이통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손해배상금 등 포함)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에게 귀책비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 또는 “이통사”가 본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1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이통사”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통사”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이동통신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통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 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공사”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이통사”와 본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이통사”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통사”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본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공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서 상의 조문해석과 관련하여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협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9조(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공사와 이통사간 기명 날인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하며, 그 효력은 2020년 5월4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0조(분쟁의 처리)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와 “이통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사”와 “이통사” 양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2020. 6. 8.

서울교통공사(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번길)

사 장 김 상 범

SK텔레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대표이사 박 정 희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대표이사 구 현 모

주식회사 LG유플러스(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대표이사 하 현 회

